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07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 박은정·조 국·김준형

이해민 · 강경숙 · 김재원

김선민 · 정춘생 · 서왕진

신장식 • 황운하 • 차규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비율은 약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적 법감정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국민적 요청은 지속되고 있음.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며소외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재판에 있어서 법정에 있는 다수인 앞에서 영상물이 재생되는 구도로 피해자의 수치심,불안감 등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디지털증거가 피해 영상인경우 재생 방식, 장소 등을 정하는 구체적 규정 없이 재판장의 개별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을 보장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재판장에서 유·무죄 인정과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제한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9조의2 등).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에게"로, "공소제기"를 "피의자·피고인에 대한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로, "사실 등을"을 "사실, 피의자·피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이 경우 통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피의자·피고 인·피해자 등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4조의2제3항 중 "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을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로, "者의 數를 제한할"을 "기회를 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으로,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를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청취한 피해자등의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한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 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99조의 제목 "(不必要한 辯論等의 制限)"을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의 사건에 대한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9조의2(성범죄 피해자 신문에 관한 특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미리 재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문사항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문사항 및 답변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1.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때

- 2.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 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때
- ④ 제3항에 따른 증거 조사 및 진술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⑤ 피해자는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게 이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피해자에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 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 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에게----------<u>피의자·피고인에 대</u>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 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 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 의자 · 피고인의 구속 · 석방 등 과, 공소제기-----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 ----사실, 피의자·피 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 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 <u>을</u>----. 이 경우 통지 설> 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 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절 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피의자 ·피고인 · 피해자 등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 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가 명 <신 설>

① · ② (생 략)

③ 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 │ ③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등 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 | 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 할 者의 數를 제한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 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 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 로 본다.

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 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94條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第294條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① · ② (현행과 같음)
-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 해자등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 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 형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항에 관한 의견을---------기회를 줄----.
 - ④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갈음하 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第299條(不必要한 辯論等의 制限)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또는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 그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때에는 訴訟關係人의 本質的權利를 害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이를 制限할 수 있다.<신 설>

- 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청취한 피해자등의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6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서 제1항에 의한 신청인이 여 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한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① 제1항에 의한 신청인이 출 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99조(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 한)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신문이 중복된 사항이 거나--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한도 에서------제한할------
 - 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 정된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 라 한다)의 사건에 대한 심리

<신 _설>

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99조의2(성범죄 피해자 신문에 관한 특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미리 재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 ②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이 제출한 신문사항을 사전 에 검토하여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문사항을 제한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 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 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문 사항 및 답변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1.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때
- 2.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때

- ① 제3항에 따른 증거 조사 및 진술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5 피해자는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 변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 게 이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 ⑥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피해자에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